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정책복지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96호
----------	-------

2016. 11. 30.(수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박우양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02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11월 24일

-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박우양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법조항 변경 (안 제10조)
  - 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 ”
  - 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 ”
-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 개정 (안 제11조)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삭제에 따라 제11조 조항 후단 삭제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#### 가. 조례안 제출 배경

-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은 긴급 재해구호, 노인 및 장애인복지증진, 저소득자녀 장학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, 2015년도 말 22,095,679천원이 조성되어 있음.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개정(2015. 12. 10)에 따라,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 내용을 변경하고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10조 제1항 제2호는, 상위법령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 “차상위계층”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는 것이 문맥상 타당한데, 같은 조 제11호 “기준 중위소득”을 인용한 바,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타당함.

####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**10. "차상위계층"**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
**11. "기준 중위소득"**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.

- 안 제11조는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개정(2015. 12. 10)으로, 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가 삭제된 바, 이에 따라 기존 조례 제11조 후단에 규정되었던 “~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”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함.

※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삭제 <2015.12.10.>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” 를  
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” 로 한다.

제11조 중 후단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 
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)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기금의 존속기한) <u>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1조(기금의 존속기한) <u>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12.30.>

10. “차상위계층“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<신설 2015.7.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(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)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#### 제3조 삭제 <2015.12.10.>

##### ■ 삭제된 조항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